

토론회

**학생생활지도법,
학생과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가?**

2023년 4월 25일 오후 4시

국회 의원회관 제4간담회실

공동 주최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강민정

목 차

인사말	4
발제	
‘학생생활지도법’과 관련 법률 사이의 해석에 대한 우려점과 해소방안 - 이제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7
토론	
‘교권 강화’라는 달리는 호랑이 등에 올라탄 교사들 - 고영주 전북동화중학교 교사, 인성인권부장	23
학생생활지도법은 교사들의 두려움을 없앨 수 있을까? - 전세란 서울 지역 초등 교사, 인권교육을위한교사모임 샘	33
그림같이 앉아 있는 학생들만 가르치겠다는 학교? - 이윤경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36
지도권 악용에 대한 대책은 과연 무엇입니까 - 안병석 서울 지역 중학생	41
교육부 의견 - 배성주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 사무관	45

축사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강민정입니다.

작년 말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학생생활지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최근 늘어나고 있는 교육활동 침해에 대해 교사의 정당한 지도권을 보장하고, 또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바로 이러한 현실과 우려를 종합적으로 논의하고자 만든 뜻깊은 자리입니다. 오늘 토론회를 앞장서 준비해 주신 학생인권법과 청소년 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청시행)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더불어 오늘 사회, 발제, 토론을 흔쾌히 승낙해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교사의 학생생활지도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일례로 정서 행동위기 학생들에 대한 제대로 된 지원 없이 교사 개인에게 모든 생활지도의 책임이 전가되고 있고, 또 아동학대처벌법에 근거하여 교사의 생활지도를 법적 고소로 맞받는 경우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교사들의 생활지도가 회피 혹은 위축되고, 이런 이유로 작년에 교사의 생활지도권을 명시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일명 ‘학생생활지도법’의 통과로 교권만 강조되며 그동안 어렵게 쌓아올린 학생인권 문제가 소홀히 되거나 위축되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러한 우려는 나름의 정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고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교권과 학생

인권은 '제로섬' 관계가 아닙니다. 스스로 존중받지 못한 이가 다른 이를 존중하기 대단히 어렵듯이, 땅에 떨어진 교권 회복과 학생인권의 확대, 확보 노력은 함께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더불어 이를 위해서는 법적 개선 노력만이 아니라 실제 학교라는 공동체 안에서 학생과 교사가 상호 존중 속에서 함께 생활해 나갈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하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교육 3주체 협약'과 같은 시도들이 적지 않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들의 실효성을 높일 방안을 찾아야 하고, 위기 행동을 보인 학생들을 학칙에 근거하여 손쉽게 처벌하기보다는 정서적, 정신적 회복 지원이나 생활교육 등을 강화해야 합니다.

오늘 여러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고 계신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모이셨는데, 교권과 학생인권의 문제를 보다 종합적으로 생각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각자의 경험과 지혜를 잘 나누어주시길 바랍니다. 저 또한 주신 말씀들 하나하나 새겨듣고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소중한 자리를 만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4월 25일
국회의원 강민정

시 간 표

사회 : 조영선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

16:00 - 16:05	인사 및 토론회 소개
16:05 - 16:35	발제 : 이제호
16:35 - 16:40	질의응답
16:40 - 16:50	토론 1 : 고영주
16:50 - 17:00	토론 2 : 전세란
17:00 - 17:10	토론 3 : 이윤경
17:10 - 17:20	토론 4 : 안병석
17:20 - 17:30	토론 5 : 배성주
17:30 - 18:00	전체 토론 및 마무리

발제

**'학생생활지도법'과
관련 법률 사이의
해석에 대한
우려점과 해소방안**

이제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I. 서론

- 2022. 12. 27.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교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다는 목적으로, 학생이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권을 명시*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일명 “학생생활지도법”)이 통과되어 2023. 6. 28.자로 시행 예정임.

- 위 개정안의 제안사유를 살펴보면,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매년 2,500여건 이상 지속 발생함에 따라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권을 명시하려는 것***이라고 하여, 해당 개정안이 발의된 주된 동력이나, 해당 개정안이 통과된 주요 사유가 교원을 교육활동 침해행위로부터의 보호하고, 이를 위해 교원에게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권을 명시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음.

- 해당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교사들이 현장에서 겪는 학생지도의 어려움에 대한 법적,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해당 법조문에 대한 과잉 해석으로 학생 인권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함께 있음.

- 이에 개정된 법의 취지와 해석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위와 같은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필요한 정책은 무엇이며, 보완의 방향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임.

- 본 발제에서는 토론자들의 다양한 논의를 위해, 이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중 ‘학생생활지도법’이라고 불리우는 개정안의 내용을 설명하며, 해당 개정안의 해석 및 적용을 둘러싼 우려점과 해소방안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함.

II. 학생생활지도법의 주요내용 및 배경

1. 개정안의 주요 내용 중 ‘학생생활지도법’의 내용

- 법률 제19096호로 2022. 12. 27. 일부 개정되어 2023. 6. 28.자로 시행되는 초·중등교육법의 내용 중 ‘학생생활지도법’이라고 알려진 내용은 제18조의4(학생의 인권 보장 등) 및 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의 내용임.

* 「초·중등교육법(시행 2023. 6. 28. 법률 제19096호, 2022. 12. 27.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1항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2118733호(2022. 12. 7.). 제400회 국회(정기회))의원원문 중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② 학생은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신설)

2. 학생의 인권침해 금지 의무 명시 (제18조의4 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p>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①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p> <p><u>〈신 설〉</u></p>	<p>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등) ①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p> <p><u>② 학생은 교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u></p>

- 제18조의4 제2항은 이번 개정안에서 신설된 조항으로 학생이 교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기존에는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만을 의무의 주체로 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었지만, 학생이 다른 권리주체에 대해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었음.

- 또, 다른 조항에서도 기존에는 학생을 의무의 주체로 하는 규정은 없었음.

-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 학생을 의무 주체로 하여, 학생이 다른 교원이나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추가하였음.

- 학생의 인권침해 금지행위 대상에 다른 기본권 주체는 명시되어 있지 않고, 교원과 학생만 기재되어있는 점, 그리고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침해 주체의 90%라는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활동 실태조사를 주요 개정 사유로 언급한 개정안의 내용에 비추어 본다면, 해당 규정을 신설한 취지는 교실 현장에서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금지하고 이와 관련된 인권침해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됨.

- 하지만, 동시에 해당 규정은 현행 제18조의4 제1항의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의 의

무와 마찬가지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의무나 권리를 부여하고 있지는 않고, 포괄적인 선언 규정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당 법조항만으로는 직접적으로 학생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음.

3. 교원의 생활지도권 명시 (제2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p>제18조(학생의 징계) ① 학교의 장은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다만,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퇴학시킬 수 없다.</p> <p><u>〈신 설〉</u></p>	<p>제18조(학생의 징계) ① 학교의 장은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할 수 있다. 다만,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퇴학시킬 수 없다.</p> <p><u>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 지도)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u></p>

- 제20조의2 또한, 이번에 새롭게 신설된 규정이자 교원의 생활지도권을 법률에 명시하는 규정으로, 의무 주체를 '학교의 장'과 '교원'으로 하여, '학교의 장'과 '교원'이 ①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②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기존에는 제18조 제1항에서 '학교의 장이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었고, 학교의 장에게만 학생지도권이 있는 것처럼 규정하였음.

-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교원'에게도 학생에 대한 지도권을 명시하고 있음.

- 특히, 현행법 제20조 제4항에서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었으나 여기에 교사의 생활지도권도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였음.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명시적으로 '교원'*에게 생활지도권이 있음을 명시함.

* : 교장, 교감, 수석교사, 교사만을 의미(「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

- 이는 제18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서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및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처럼 선언적, 포괄적으로 규정된 것과 달리, 기존의 제18조 제1항의 징계권과 학생에 대한 지도권 중 지도권 부분을 교사에게도 부여한 규정인 바, 그 내용에 있어, 학생의 기본권을 제한하여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해석됨.

Ⅲ. 학생의 인권침해 금지 의무의 해석 및 우려점에 관하여

1. 학생의 인권침해 금지 의무의 해석과 적용

-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학생의 인권침해 금지 의무는 포괄적, 선언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해당 규정만 가지고는 구체적으로 학생들에게 어떤 행위를 금지하고, 어떤 행위가 인권침해에 해당하는 것인지 알 수 없음.

- 이때, 제18조의4 제1항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의 학생의 인권보장 의무와 비교하면, 제18조의4 제1항의 규정은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이 학생의 인권을 보장해야 할 의무, 즉 ‘해야 할 의무’를 정한 것으로서,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안 될 뿐 아니라, 학생의 인권을 보장해야 하는 적극적인 의무를 같이 가지고 있으나, 이번에 신설된 학생의 의무는 ‘교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되는 의무’로서 ‘해야 하지 않을 의무’를 정한 것으로, 학생은 인권을 침해하지 않을 의무만 있을 뿐, 문언상 타인의 인권을 보장해야 하는 의무까지 지고 있는 것은 아님.

- 그러나 이러한 법률의 입법형식과 별개로, 제18조의4의 제1항과 제2항의 내용은 모두 포괄적, 선언적인 규정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의 학생인권보장의 무가 해석되어 온 선례들을 통해, 학생의 인권침해 금지 의무가 어떻게 해석될 것인지 예상을 할 수 있음.

가. 구체적 권리나 의무를 형성하지 않는다고 해석

- 이 사건 규정의 해석과 관하여 과거 지역의 ‘학생인권조례’와 이 사건 조항이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에게 구체적인 권리 의무를 부여하는지가 문제된 사안이 있었음.

- 해당 사안에서 대법원은 ‘그 내용을 강제하는 어떤 제재수단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정규교과 시간 이외 교육활동의 강요 금지, 학생인권 교육의 실시 등의 규정 역시 교육의 주체인 학교의 장이나 교사에게 학생의 인권이 학교 교육과정에서 존중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그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고 있는 데 지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 추98 판결 참조)라고 판시하였음.

- 또한, 다른 사안에서 하급심 판례는 '위 각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례는 전체적으로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이미 관련 법령에 의하여 인정되는 학생의 권리를 열거하여 그와 같은 권리가 학생에게 보장되는 것임을 확인하고 학교생활과 학교교육과정에서 학생의 인권 보호가 실현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구체화하고 있는 데 불과할 뿐, 법령에 의하여 인정되지 아니하였던 새로운 권리를 학생에게 부여하거나 학교운영자나 학교의 장, 교사 등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서울행정법원 2018. 9. 14. 선고 2017구합88640 판결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음.

나. 권리나 의무를 형성하진 않지만, 위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해석

- 반면, 학생인권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행위가 위법한 행위인지 아닌지가 문제 된 사안에서는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는 "학교의 설립자 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은 "학교의 장은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위와 같이 초·중등교육법령에 위반하여 비교육적인 방법으로 E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다'(울산지방법원 2013. 7. 18. 선고 2013가합61 판결 참조)라고 판단한 사례가 있음.

- 또한, 학생인권조례와 함께 적용하여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였고, 위 조례는 학생들이 모든 물리적,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는 것을 천명하고 있다(제6조)'고 하면서, 위 선언적 규정을 그 자체로, 구체적인 행위가 위법한 행위였음을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위 규정을 적용하기도 하였음.

다. 소결론

- 이러한 기존의 선례에 비추어 본다면, 학생의 인권침해 금지 의무는 그 자체로 학생에게 구체적인 의무를 부여하거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지만, 인권침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 그 자체로 혹은 학생인권조례에서 명시된 학생의 인권침해 금지규정과 함께 적용되어, 어떤 학생의 구체적인 행위에 관하여, 그 학생의 행위가 법적으로 위법한 행동, 혹은 징계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개념 기준으로서 적용될 수 있음.

2. 학생의 인권침해 금지 의무와 관련된 우려점

- 앞서 살폈던 것처럼 학생의 인권침해 금지 의무는 그 자체로는 추상적, 선언적 규정으로서 그

자체로서는 어떤 의무를 정의하고 있는지 알기 어려움. 단, 해당 규정은 현재 각 지역에 있는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그 내용이 구체화 될 수 있음.

- 그러나 이는 ①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지역과 없는 지역에 따라, 그리고 학생인권조례의 내용의 달라짐에 따라, 해당 규정을 통해 학생들에게 금지되는 인권침해 행위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으며, ② 특히, 아래에서 설명할 교원의 생활지도권과 연결할 때, 어떤 학생의 행동이 인권침해 금지의무나 구체적으로 금지되는 행동에 해당할 경우, 교사의 학생생활지도를 통해 제한될 수 있는데, 이때, 학생인권조례가 없거나 학칙 등으로 학생에게 금지되는 행위를 매우 넓게 설정하는 경우, 학생의 기본권이 지나치게 제한될 우려가 있음.

- 또한, 학생에게만 인권침해 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교원에게는 학생에 대한 인권보호·보장 의무나 금지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은 기존의 제18조의4를 통해 학교라는 기관의 학생인권 보장 의무를 명시하고자 하는 취지에 벗어나며, 학교 현장에서 학생인권보호보다 학생의 기본권제한이 우선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음.

IV. 교원의 생활지도권의 해석 및 우려점에 관하여

1. 교원의 생활지도권의 해석 및 적용

가. ‘법령과 학칙’의 성격

- 법령이란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감사원규칙 및 이들의 위임을 받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훈령, 예규 및 고시 등 행정규칙을 의미함.(행정기본법 제2조)

- 학칙(학교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제8조에 정의되어 있으며, 제1항에서 학교의 장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 규칙(이하 ‘학칙’)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으며, 학칙의 기재 사항과 제정·개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음.

- 또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에서는 학칙의 기재사항에 대해 자세하게 제시하고 있으며* 동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기재사항 등)

① 법 제8조에 따른 학교의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1. 수업연한·학년·학기 및 휴업일 2.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3. 교과·수업일수 및 고사와 과점수료의 인정 4. 입학·재입학·편입학·전학·휴학·퇴학·수료 및 졸업
5. 조기진급, 조기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6. 수업료·입학금 기타의 비용징수
7. 학생 포상, 징계, 교육목적상 필요한 지도 방법, 학업 중단 예방 및 학교 내 교육·연구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시행령 제4항에서는 학교의 장은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러한 학칙의 성격에 대해서 기존의 하급심 판례 및 대법원 판례에서는 ‘초·중등교육법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학교의 장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 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17조에 의하면 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보호되며,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이 사건 규정은 D학교장이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정 및 개정한 학칙으로, D학교의 자치규범으로서 당연히 구속력을 갖는다’(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3두 26408 판결 참조, 수원지방법원 2019. 12. 5. 선고 2018구합71206 판결 등 참조)라고 판시하는 바, 학칙은 자치규범이며, 이는 규범으로서 내부 구성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는 규범으로 해석되고 있음.

- 이를 정리하면 교원의 생활지도권에 규정된 ‘학칙’이란 그 자체로 법령의 범위에서 제정되어야 하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정되면, 학교 구성원에게는 구속력을 가지게 되는 자치규범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나. 제18조 제1항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는 지도’의 판단 기준

- 위와 같은 법령과 학칙의 성격에 비추어 본다면,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는 지도는 큰 틀에서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지도로 제한된다고 해석되어야 함.

- 가장 직접적인 관련 법령으로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상의 교육목적을 위한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규정을 들 수 있음.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7호에서는 ‘학생 포상, 징계, 교육목적상 필요한 지도 방법, 학업 중단 예방 및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을 학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시행령 제31조 제8항에서는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직접적으로 상위 법령인 법 제18조제1항의 본문을 인용하면서, 구체적으로 생활지도권의 내용을 제한하고 있음.

- 이외에도 교육 관련 법령, 형법, 특별형법(아동학대처벌법 등), 아동복지법 등 학생의 지도 행위와 관련이 있는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도가 이루어져야 함.

8.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9. 학칙개정절차 10.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② 삭제 (2005. 1. 29.)

③ 다음 각 호의 학교·학과·과정 또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학교의 학칙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각각 그 설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2. 15.>

1. 법 제5조에 따른 병설학교 2. 법 제43조의2에 따른 방송통신중학교 또는 법 제51조에 따른 방송통신고등학교

3. 법 제48조에 따른 학과 4. 법 제49조에 따른 시간제 또는 통신제 과정 5. 기숙사

- 특히 구체적으로 교사의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 행위가 문제가 되었을 때, 그 지도가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는 지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 판례 사안에 따라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판단이 이루어짐.

- ① 교원이 행한 징계나 지도가 위법하여 교원에 대하여 징계를 한 사안, 내지는 교사의 교육활동에 대하여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에 대한 처분이 문제가 되는 행정소송에서는 교원의 지도 행위가 법령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혹은 교사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과도하게 학생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이 이루어짐. 관련 판례에서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 및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제6조 제2항을 위반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될 수 없는 체벌로 지도를 하였으며, 해당 폭행도 교육적 목적이 아닌 분노의 표출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방법에 있어서도 인격적 모멸감을 느꼈을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고, 반성의 정도나 학교 교사 전체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 등에 비추어, 해당 교사의 행위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지도의 범위를 벗어나 중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서울행정법원 2017. 1. 6. 선고 2016구합72228 판결 참조)가 있음.

- ② 교원의 지도가 형사처벌에 해당하는 범죄에 이르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도의 내용이 형법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예를 들어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에 해당하는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이 이루어지며, 관련 판례에서는 '따라서 피고인이 위 중학교 교사로서 학생들에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학교의 생활지도 규정에서 금지하는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여 체벌을 하였다면 혼욕 또는 지도 목적으로 행하여졌다고 할지라도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도1718 판결 참조)라고 판시한 선례가 있음.

다. 새로 규정된 교원의 생활지도권에 대한 판단 기준

-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에서는 기존에 학교의 장에게 권한이 부여되어 있던 징계권과 생활지도권을 분리하여 학교의 장과 교원에게 생활지도 권한을 부여하는 규정이 신설된 것인 바, 그 문언의 내용과 법령의 체계상 새로이 신설된 교원의 생활지도권이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는 지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존의 제18조 제1항의 학교의 장의 징계 혹은 지도가 법령과 학칙에 따라 적법한 징계 혹은 지도인지 판단하는 기준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됨.

- 실제 기존의 대법원 판례에서도, 비록 기존 법률에서는 학교의 장의 학생 지도 권한만 명시되어 있지만(법 제18조 제1항), 'A교사가 종이 울린 후에도 교실 뒤에 서 있는 학생을 엎드려뺨쳐를 시키고, 교실 앞으로 들어온 학생의 뺨을 때리고, 교무실 앞에 서있는 학생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때린 행위'에 대해서, 이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교육적 지도행위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며, 그 기준으로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제1항 본문 및 그 위임에 따른 동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을 근거 법령으로 준용하였음(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도1718 판결 참조). 즉, 교원의 생활지도 권한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만 없었을 뿐, 이미 교육 현장과

실제 사법적 판단에서는 교원의 생활지도권한이 인정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새로이 개정된 학생생활지도법에는 교원이라는 주체에게 생활지도권한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 이외의 다른 신설 규정이 없는 바, 큰 틀에서 적법한 생활지도권한을 판단하는 기준은 종래와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정리하면,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에 규정된 교원의 생활지도가 법령과 학칙에 정하는 바에 따르는 지도로서 적법한 지도가 되기 위해서는, ① 지도의 행위나 내용이 현행 법령(만일 해당 지역에 학생인권조례 등 학생지도행위와 관련한 조례가 있다면, 그러한 조례까지 포함)을 준수하는 행위여야 하고(예를 들어,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거나 처벌이 가능한 폭행 행위에 이른다면, 이는 적법한 생활지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② 교육적 목적에 비해, 학생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침해하는 행위가 아니어야 하며, ③ 비록, 학칙에 따른 지도를 할지라도, 해당 학칙이 법령을 위반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학칙이거나 관계 법령상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만들어진 학칙이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할 수 있음.

라. 소결론

- 따라서 비록 개정 법률에 의해 교원의 생활지도 권한이 새롭게 명시되었다고 할지라도, 특별히 더 큰 권한이 부여된다고 해석할 수 없고, 만일, 특정 교원의 지도 행위가 위법한지 여부에 대해서 법적인 다툼이 생긴다면, 해당 지도 행위가 법령과 학칙에 따라 정당한 행위인지 판단을 받아야 함.

- 단, 교사의 특정 지도 행위의 위법성 여부와 별개로 이제는 학생지도 권한이 교사의 권한으로 명시적으로 규정되었는바, 해당 조항이 교사의 생활지도행위의 근거 법령이 되어,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학교 구성원 당사자(교원, 학생 등)구체적인 권리·의무를 형성할 수 있음.

2. 교원의 생활지도권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한 우려점

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과의 관계

- 학교의 장의 학생인권 보장 의무 및 학생의 인권침해 금지 의무가 구체적인 권리 의무의 내용이 없는 추상적, 포괄적, 선언적 규정인 것에 대비하여 교원의 생활지도권은 기존의 학교의 장의 징계권 및 학생 생활지도권의 내용과 비교하여 보았을 때, 교원에게 구체적인 학생 생활지도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 또한, 이러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권한은 기존의 학교의 장의 학생 생활지도권의 내용, 그리고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판례 법리상으로도 확인할 수 있고, 법률적으로도 그 내용이 확인될 수 있는 구체적인 권한이라고 평가됨.

- 따라서, 이러한 권한이 법률의 규정으로 명시될 경우, 근거 법령으로서의 명확한 권리로 효력을 가지게 되고, 초·중등교육법 내부에서 구체적인 권리 의무를 형성하거나, 위임입법으로도 그 내용이 구체화 될 수 있고, 타법률과의 관계에서도 더 명확하게 교사의 학생생활지도 권한의 내용을 준용할 수 있는 근거 법령으로 기초할 수 있음.

- 현재, 교원의 학생생활지도권과 가장 밀접한 관계 법령은 교원지위법임.

- 학생생활지도법 개정안이 통과되자마자 교육부에서는 교원지위법 제15조 제1항 및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11조에서 교육부장관에게 위임된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겠다고 발표하였고, 2023. 3. 23.자로 일부개정하여 당일 시행되었음.

- 주요 내용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정하는 고시의 제2조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추가한 것임.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 교원의 교육활동(원격수업을 포함한다)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형법」 제8장(공무방해에 관한 죄) 또는 제34장 제314조(업무방해)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2.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3.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4.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신설)
5.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영상·화상·음성 등을 촬영·녹화·녹음·합성하여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
6. 그 밖에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

- 과거에는 학교 현장에서 위 5가지의 사유가 아닌 학생 지도 불응 행위 및 각 5가지에 이르지 않는 모욕이나 욕설 등에 대해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정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으나, 이제는 교원의 생활지도권 조항이 규정됨에 따라, 교원의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규정지을 수 있는 근거가 생긴.

- 우려의 점은 교원지위법에서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에게 교원지위법 제18조 제1항에 정의된 조치*를 할 수 있는 바, 해당 조치는 봉사활동부터 퇴학까지 정의되어 있어 「학교폭력예방 및

* 제18조(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등)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소속 학생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4. 16.>

1. 학교에서의 봉사 2. 사회봉사 3.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4. 출석정지 5. 학급교체 6. 전학 7. 퇴학처분

대책에관한법률」(이하‘학교폭력예방법’)에 정의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준하는 처분이 내려짐. 이는 교원의 생활지도권의 행사로 인해 학생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

- 따라서 교원의 생활지도권 및 교원지위법의 제재조치는 교육활동을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긴급한 위기 상황에서의 대응 및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에 대한 학습권 보호를 위해서는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으나,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다고 지목된 학생의 입장에서는 예측하지 못한 불측의 기본권 침해 상황에 놓일 수 있는 위험성이 동시에 존재함.

나. 교원의 생활지도권의 해석과 적용의 어려움

- 위와 같은 위험성은 교사나 학생 개인의 문제라고 할 수 없고, 교원 생활지도권이 구체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에 비해 그 내용에 있어서는 너무 광범위하고 내용이 명확하지 않으며, 해석이 모호하다는 어려움으로 인한 것이라 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정해 놓은 고시의 각 내용을 살펴보면, 「형법」 제8장(공무방해에 관한 죄) 또는 제34장 제314조(업무방해)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1호)의 경우, 그 행위의 유형이 형법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로 비교적 명확한 편이고,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성희롱, 2호),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3호),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영상·화상·음성 등을 촬영·녹화·녹음·합성하여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5호)는 그나마 행위의 태양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정의되어 있거나, 기존의 개념(성희롱, 부당 간섭 등)을 차용하는 등 예측가능성과 명확성이 있음.

- 그 밖에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6호)는 그 행위의 판단을 학교장이 하도록 하고 있어, 기준이 자의적일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특정 학생이 교사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한 때로 한정하여 내용을 해석할 여지가 있음.

- 반면, 학생생활지도의 경우, 개별적·구체적 상황에 따라 그 내용이 크게 달라지고, 또한 법령과 학칙에 따라 지도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학칙의 내용에 따라 학교별로 지도의 내용이 천차만별이 될 것이며, 나아가 지도하는 교사의 입장이나 지도받는 학생의 입장에서도 각 학교의 학칙이 법령을 준수하는 것인지 검토를 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음.

- 무엇보다, 기존의 다른 제재 행위들은 학생의 능동적인 행동에 대한 교사의 대응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생활지도 불응 행위의 경우, 교사가 먼저 선제적으로 생활지도의 대상이 되는 학생에 대한 판단을 하여야 하고, 학생의 입장에서는 교육활동을 침해하려는 적극적인 고의가 없는 상황에서 자신의 행동이 생활지도의 대상이 될지 모른다는 불안정한 상황에 놓이게 될 수 있음.

- 교사의 입장에서도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본인의 의도에 상관없이 법령에 따르지 않은 위법한 생활지도를 하게 될 위험성도 있음. 또한 교실 현장은 교사의 권력과 학생 개인의 권력이 불균형하게 존재할 수밖에 없는바, 이러한 구조적인 차이로 인해, 교사나 학생 모두 어느 지점이 서로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은 위법하지 않은 생활지도인지, 생활지도에 대한 불응인지 알기가 어려움.

- 반대로, 현행 법률 및 판례 법리상 명백히 위법한 행위(예를 들면, 아동학대에 준하는 지도행위)에 해당하는 지도가 아닌 그 외의 생활지도는 모두 법령과 학칙에 따르는 생활지도로 인정해버린다면, 이는 학생의 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가 될 것인 바, 법률적인 타당성을 넘어 지향해야 할 방향도 아니며, 타당한 방향이 아니라고 할 것임.

- 마지막으로, 개정 전 생활지도권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제1항에서 학교의 장의 '징계' 권과 함께 병렬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지도'가 사실상 강제성 있는 제재 및 처벌로서 해석될 여지도 있는바, 이 경우 판단 기준이 모호하면, 학교 현장에서 학생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지도의 내용이 적용될 가능성도 존재함.

다. 소결론

- 앞서 살펴본 것처럼, 특정 교원의 지도행위가 법률에서 정의한 '법률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하는 행위'인지에 대한 법률적 판단 기준과 선례들은 존재함.

- 그러나 위와 같은 판단 기준은 사안별로 구체적·개별적으로 확인할 수밖에 없으며, 실시간으로 발생하는 수많은 생활지도 사안에 사법적 판단 기준과 방법론을 적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

- 따라서, 학생생활지도법과 교원의 생활지도권한이 학생과 교사를 모두 보호하고, 학교 교육 공동체가 순기능을 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 및 보완 방향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V. 결론 및 제언

- 현재 학생생활지도법과 별개로 교원단체를 중심으로 교원의 아동학대 신고 피해에 대한 예방 및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

- 그 내용의 주요 골자는 학생생활지도에 대한 면책 조항을 신설하고, 공무집행 방해 및 무고죄에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교원에게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고객응대근로자에 준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는 내용임.

- 그러나 해당 생활지도권 조항이 바로 그런 요구를 반영하여 나온 것이며,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교사의 생활지도권에 대한 해석과 적용의 어려움으로 생활지도권은 그 자체로 학생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강제력으로 작용할 수 있음.

- 따라서 생활지도권 규정 그 자체로 면책권이 부여된다고 해석되거나 학교 현장에서 그렇게 오인될 경우, 정당한 지도를 벗어난 인권침해나 아동학대에 준하는 행위가 발생할 위험이 있으므로 생활지도권이 교원에게 특수한 면책권을 부여한다고 해석하면 안 되며, 이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나아가, 인권침해 및 아동학대에 대한 면책 규정은 그 자체로 현장에 미치는 영향력이나 부작용이 크고, 학교 구성원의 인권 보호 및 교육적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적합하지 않으므로, 그 취지와 목적에 적합한 방법과 정책의 정비를 섬세하게 논의해야 함.

- 그럼에도 이러한 논의와 요구가 나오는 현상은 역설적으로, 교사를 위해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권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었음에도, 해당 지도 권한을 통해 교원의 안전한 노동권을 확보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으로 보임.

- 즉, 아직까지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규정이 교원에게는 학생생활지도권을 행사하다가 아동학대 신고, 민원, 각종 쟁송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불안함을 해소하여 주지 못하고, 학생에게는 언제든지 자신이 생활지도의 대상이 될 수 있어 행동의 자유가 제약당한다는 문제를 해소하여 주지 못함.

-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정책 보완 방향을 제안함.

① 생활지도에서 학칙 부분을 삭제하고 학칙의 제정과 운영을 위한 별도의 자치회를 구성 : 생활지도의 영역은 법률적으로 그 행위 태양을 규정하거나 매 상황에서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기에 어려운 영역임. 또한 생활지도권은 교원지위법과 결합하여 학생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바, 학생생활지도의 근거를 상대적으로 명확성이 담보되는 법령으로 국한하고, 대신 법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내용의 학교 공동체를 위한 학칙에 대한 지도는 교사와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준수하도록 함.

② **학칙 혹은 생활지도의 구체적 내용을 교사, 학생, 학부모 등 학교의 구성원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 : 교원의 생활지도권의 내용에서 ‘학칙에 따른 지도’ 부분을 삭제할 수 없다면, 적어도 학칙을 정하는 데 있어서 전체의 민주적 동의 절차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할 것임. 왜냐하면 학교 구성원이 학칙의 내용을 함께 공유하고 동의하여야 교사와 학생 사이의 생활지도 활동이 서로 예측가능하고 합의가 된 범위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임. 단, 이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정한 학칙이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진 않는지, 또 학내·외 구성원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소외하는 내용은 없는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정책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임.

③ **학생인권조례 내지 학생인권법의 제정** : 교원의 생활지도권한이 학생의 권리·의무에 끼치는 영향이 큰 반면, 그 내용이 불명확하여 학교 공동체 구성원 모두를 불안정한 상황에 놓이게 한다면, 전체적으로 모두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내용으로 그 기준을 정하는 것이 학생생활지도의 실질적인 효용성을 담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임. 학생인권조례 및 학생인권법은 그 자체로는 인권의 내용을 확인하고 선언적인 규정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적어도 교원이 생활지도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는 그 기준을 제시할 수 있고, 그 내용이 대부분 헌법상 기본권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되어있는 바, 구체적으로 교원의 교육활동을 제한하지도 않으므로 교원과 학생 모두를 보호하는 보완 방향이 되어줄 것임.

- 교사의 인권과 학생의 인권은 배치되는 개념이 아니며, 우리는 지금 어느 한 주체의 인권 강화가 아닌, 학교라는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이 어떻게 서로 안전하고 서로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지 논의하는 것이 필요함. 그리고 학생생활지도법도 그러한 방향에서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MEMO

토론

**'교권 강화'라는
달리는 호랑이 등에
올라탄 교사들**

고영주
전북동화중학교 교사
인성인권부장

“폭언 당했다 vs 생활지도 차원”...중학교서 교사 폭언 ‘공방’

연합뉴스 김진방 기자 2023. 4. 13.

13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전주의 한 중학교 담임교사인 A 교사는 1교시가 끝난 뒤 쉬는 시간에 자신이 담임을 맡은 B 학생을 불러 생활지도를 했다. 학부모 측은 A 교사가 아이를 반지하 미술실로 불러 20분이 넘도록 꾸중했다면서 그 과정에서 ‘너는 XXX가 없고, 버릇이 없다’는 식의 폭언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또 이 과정에서 2교시 역사 수업에 지각해 학습권을 침해받았다고 피해를 호소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A 교사는 “폭언을 사용한 적은 없으며 ‘예의가 없고, 버릇이 없다’고는 했지만, 생활지도 차원이었다”면서 “학생을 혼내기도 했지만 어르고 달래기도 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반지하 미술실에서 폭언이 이뤄졌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미술 교사로서 미술실로 학생을 불러 지도한 것이지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B 학생의 학부모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학교장 면담과 신문고 청원, 도교육청 민원 제기, 전북교육인권센터 신고 등을 통해 강력히 항의했다. 학교 측은 사안이 조사 중이지만 학생과 교사를 우선 분리하는 차원에서 담임교사를 교체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전북교육인권센터에서 관련 사안을 조사하고 있다”면서 “해당 교사는 현재 병가 상태며 조사가 이뤄지고 결론이 나올 때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A 교사가 학습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며 “담임 교사의 생활 지도권이 어느 정도까지 인정되는지가 판단의 근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래는 이 뉴스에 달린 몇 개의 댓글이다.

*** 2023. 4. 13. 16:03
교사가 그정도는 훈계할수 있어야지
미술실이 지하일뿐인데
마치 지하실로 데리고 간 것처럼
얘기하는건 뭔가

***** 2023. 4. 13. 16:00
선생님말이 맞네

*** 2023. 4. 13. 15:58
부모가 가르치고 학교 보내지 마세요.

다음은 전라북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2023학년도 학생생활교육계획 예시다.

■ 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 근거(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시행: 2023.6.28.)

○ 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 시행령 개정 후 학생생활지도 방안 등 안내 예정(추후 공문 시행)

■ 교육적 차원의 학생 생활 교육* 및 징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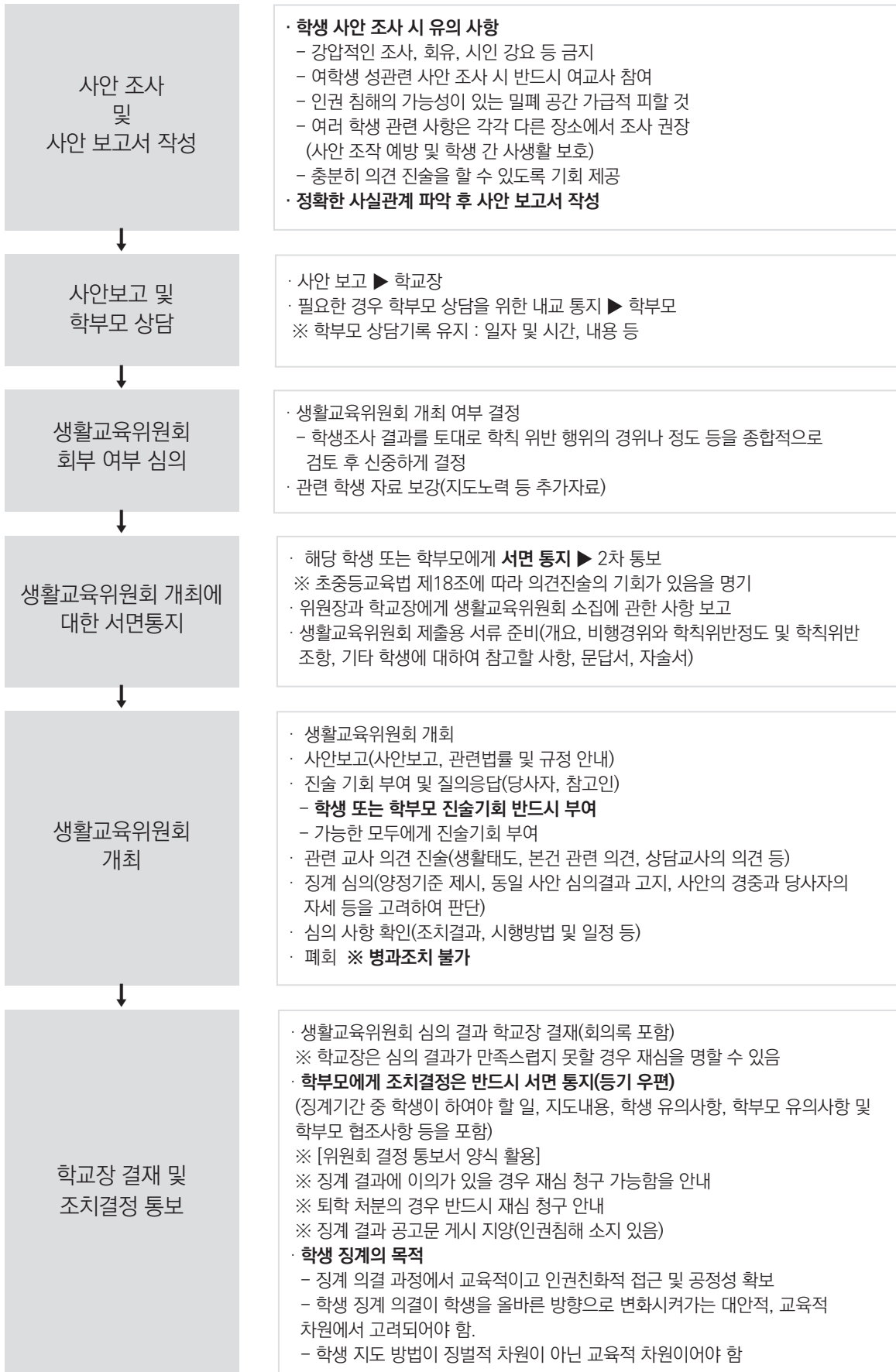
◎ 근거(초중등교육법 제18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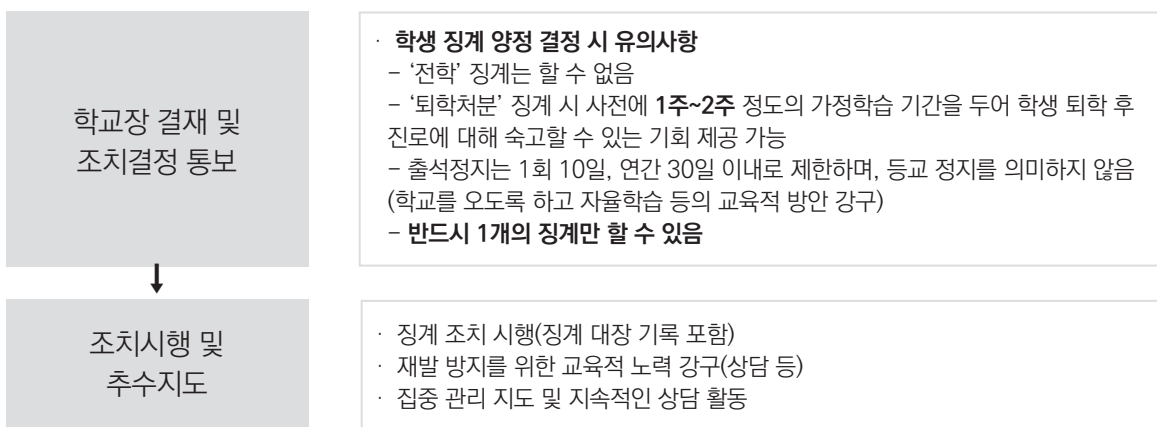
○ 제18조(학생의 징계)
 ① 학교의 장은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다만,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퇴학시킬 수 없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려면 그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 **반드시 학교폭력 사안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없음**
- 학생을 징계하려면 그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절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위원회 개최 전 사전에 알리고, 그 결과는 학생 및 보호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한다.



* 생활지도가 일반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려는 노력을 의미한다면 생활교육은 학생 존중을 기반으로 학생이 스스로 생각과 태도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하도록 돕는다는 의미가 더 강하다는 의미로, 보다 교육적인 용어라 생각하며, 법률용어를 생활 지도를 선택한 것 역시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전북교육청은 생활교육을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앞서 소개된 뉴스의 사건을 내가 담임교사였다면 어떻게 생활교육했을까? 일단 전북교육청 민주 시민교육과의 생활교육 예시에 따라 학생이 어떤 생활규정을 어겼는지 확인하고, 인성인권부에 문의해서 이 학생이 징계를 받을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해보고, 경미한 사안으로 판단받아 학생을 교육 또는 상담을 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리고 보호자에게 전화나 문자 등으로 학생생활규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통보했을 것이다. 아니면 적어도 직접 생활규정을 찾아보고 판단을 내린 뒤 절차를 진행했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교육의 방법은 학생생활규정을 참고했을 것이다. 우리 학교의 생활규정을 보면 이렇다.

제32조【체벌금지】 학교에서 체벌에 해당하는 모든 행위는 금지하며, 특히 금지하는 체벌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도구를 이용한 체벌
2. 손이나 발 등 신체를 사용하는 체벌
3. 반복적, 지속적 신체 고통을 느끼게 하는 기합 형태의 체벌
4. 학생끼리 체벌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5. 학생들에게 모욕감이나 수치심 등을 느끼게 하는 언어적 폭력

제33조【교사의 권한】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교사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적 상담과 조언
2. 교육환경 조성
3. 행동개선 요구
4. 훈계·훈육 등의 교육적 조치
5.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소집 요구와 의견 제출
6. 교권보호위원회 구제 신청

제34조【훈계·훈육 등의 교육적 조치】

①교사는 학생과 상담하여 먼저 문제행동의 원인을 파악한다.

②교사는 학생의 바람직한 변화를 끌어내기 위해 다음과 같은 교육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자리에서 일으켜 세우기

2.교실 내 특정 공간으로 이동시키기

3.적정한 수준의 학습 과제 부여 또는 방과 후 교육

4.망가진 시설, 물품, 오염 등에 관한 원상복구 요구

5.학부모 통보와 상담

6.기타 학생생활교육위원회가 마련한 인권우호적인 교육적 조치

③교사가 상담과 교육적 조치를 반복해도 학생이 행동 변화의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면 학생 생활교육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교사들은 이런 조항들을 알고 있을까? 지금까지 내가 거처온 학교들에서, 특히 휴대전화 문제로 규정 개정 과정에 참여하면서, 교사들이 학생생활규정을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경우를 거의 본 적이 없었다. 학생생활규정이니까 그 내용은 학생들의 행동을 규제하는 내용일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대부분 그 내용을 모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는 학생인권조례 내용을 담고 있어서 학생의 인권만 보장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나. 그래서 교사들은 자신이 생활규정이나 학칙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음을 모르고 있거나 망각하는 경우가 많다.

앞서 뉴스의 사례를 다시 살펴보자. 담임교사의 말을 그대로 믿고 “폭언을 사용한 적은 없으며 ‘예의가 없고, 버릇이 없다’고는 했지만, 생활지도 차원이었다”면서 “학생을 혼내기도 했지만 어르고 달래기도 했다”고 해명했다고 해도 그의 행동이 우리 학교의 생활규정에 제시된 교사의 권한에 해당한다고 단정지어 말할 수 있을까? 학생에 대해 단언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기도 하고 교육적이라고 말하기도 어렵다. 해당 학생의 행위가 어떤 점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말해 주고 이에 대한 행동의 개선을 요구하고 관련하여 과제를 부과하거나 학부모 통보 및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적절한 교사의 생활교육이었을 것이다. 뉴스의 마지막에는 교사의 “생활지도권”이 어느 정도까지 인정되는지가 판단기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는 그 학교의 학생생활규정과 학생인권조례를 판단의 근거로 삼을 것이 분명하다.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학생생활지도법”은 이런 선에서 교사의 “생활지도권”의 한계를 그을 수 밖에 없다. 학생인권을 침해하는 법을 만들 수는 없는 것이 너무도 명백하니까. 그래서 학생인권 때문에 교권이 추락한다는 주장에 따라 법을 만들고 싶어도 만들 수가 없다.

우리 학교 생활규정은 전북학생인권센터에서 학생인권조례를 중심으로 만든 학생생활규정 예시안을 거의 그대로 따르고 있다. 이는 어느 정도 학생인권의 측면에서 검토를 마친 권한 규정이라는 뜻이다.(교육적 조치라고 정한 부분 중에서는 자리에서 일으켜 세운다는 것이나, 방과 후 교육 등은 여전히 인권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할 수도 있지만 교사들의 기준에서는 그것도 너무 축소된 권한이라고 생각할지 모른다. 또 교사의 행동을 너무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적일 수는 있다. 따라서 예시의 차원 정도로 보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 교사가 규정에 따라 교육하는 것은 민주시민으로서 당연한 것이고 교사의 그런 행위 자체가 민주시민교육의 실천이 될 수 있

다. 그리고 혹시 발생하게 될 법적, 행정적 절차에서는 이런 절차에 따르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큰 차이를 낳는다고 알고 있다. 그래서 나는 이 절차를 지키고자 노력한다. 교육적으로도 좋고, 학생 인권을 위해서도 좋은 일이지만 나를 지켜주기도 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런 규정을 알고 있다고 하여서 특별한 교육적 방법으로 학생들을 더 잘 교육하는 것은 아니다. 다른 교육적 노력이 더 필요하다. 하지만 학생들과의 관계는 훨씬 우호적이고 상호존중의 분위기가 형성될 여지가 많다.*

이렇듯 “학생생활지도법”이 시행된다고 해도, 또 학생들의 인권침해 금지 의무를 만든다고 해도, 교사가 법령과 학칙에 따라 “지도”해야 한다는 내용이 사라지지도 않고 그럴 수도 없다. 민주주의 사회고 법치주의 사회니까 그렇다. 그래서 위에서 제시한 생활교육의 방식에서 크게 달라질 수 없다. 지금 교육부나 교육청 그리고 교원단체 및 전교조 등의 노동조합에서도 교사의 “생활지도” 방식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교권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구체적 내용을 만들어보려고 해도 이를 넘어설 수는 없다.

이렇게 실효성도 많지 않고 비교육적인 일임에도 왜 교사들은 이런 법을 원할까? 첫째, 상위법 우선의 원칙을 알고 있는 교사들은 학생인권조례보다 초중등교육법과 그 시행령이 상위이므로 학생인권조례와 학생생활규정보다 더 강력하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이는 학생인권조례의 규정력을 약화시키고 학생인권조례가 없는 지역에서는 더욱 학생생활규정을 학생 통제적으로 개정할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당연하다. 교사들은 이를 “교권”의 강화로 인식할 것이다. 그리고 법적으로 문제가 생겨도 강화된 교권에 의해 자신의 행위를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여길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더욱 학생인권조례로는 학생인권을 지키기 어려워졌다. 이제는 같은 법률상으로 학생인권 보장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생인권은 헌법적 기본권이고 교사의 권한은 그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적이고 법률적인 권한이다. 헌법적 기본권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강화된 교사의 권한에 의해서 침해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

둘째, 학칙의 일부에 숨어있는 자의적 조항들에 기대서 다수의 주장을 교육에 관철하려는 자신들의 “생활지도”를 정당화하는 것을 원하는 것은 아닐까 의심된다.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불응한 학생” “수업 또는 타인의 학습을 방해한 학생” “이 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학교생활교육위원회의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정당한 지도”를 학교생활교육위원회에서 다수결로 정하고, “수업 및 학습 방해”를 학교생활교육위원회에서 다수결로 정하고, 기타 다른 학생의 행위들을 협의를 통해 지도하고 징계할 수 있게 한다면 어떨까? 전복처럼 학생인권조례가 있어서 어떤 가이드라인

* 예전에 근무한 한 학교는 “원색의 염색은 불허한다.”라는 규정이 있었다. 학생들과 생활규정 개정을 논의하다가 한 학생이 말했다. “원색이 아닌 염색은 허용한다고 해석할 수 있죠?”라고. 인권과 헌법의 기준으로 보면 기본권의 제한은 공익을 목적으로 최소한으로 법률로 가능하다고 배웠으므로 염색의 권리는 최대한 보장하는 쪽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고 말했다. 다음 날 그 학생은 민트색으로 염색하고 왔고 인성인권부 교사는 이 학생을 불러 “생활지도”를 했다. 내일까지 염색을 지우고 오라고 지시했다. 그 학생은 나에게서 들은 내용을 말하며 자신은 잘못이 없다고 주장했고, “지도”가 어려워진 인성인권부 교사는 담임교사에게 지도하도록 인계했다. 나는 담임교사에게 민트색은 원색이 아닌 색이므로 학생이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학생인권교육센터에 전화해서 그 내용을 확인시켜주었다. 학생은 다음날 염색을 지우지 않고 왔고, 점심시간 급식소에 밥을 먹으러 갔다. 그 학생이 급식소에 들어서자 상급생들의 환호성(비교는 의도)이 크게 나왔다. 그 학생은 상급생들이 자신을 괴롭히고 있다고 했고, 상급생들은 자신들은 염색을 못했는데 왜 이 학생만 봐주냐면서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나는 교장에게 학생인권센터와 통화해서 규정을 어긴 것이 아니라는 답을 듣게 했고, 부당하게 생활지도하고 다른 학생들의 괴롭힘을 방관하는 것은 학교가 잘못하는 것이니 방송을 통해 이 학생이 규정을 어기지 않았고, 다른 학생들은 이 일에 대해 비난해서는 안 된다고 안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장은 다행히 그렇게 했고 학생은 주목을 많이 받아서 불편했지만 다행히 더 이상의 괴롭힘은 없었다. 여기서 학생은 잘못이 없었다. 잘못된 학교 측과 다른 학생들이 했다. 하지만 교사들은 자신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학생인권 때문에 이뤄지지 못했다고 믿었다. 반면 나는 학생들과 생활규정, 학생인권조례를 공부하면서 신뢰도가 높아졌고, 서로를 존중하는 분위기가 강해졌다.

을 주지 못하는 지역이라면 과연 학생인권은 어떻게 될까? 전북은 학생인권조례와 교사의 권한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있어도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이제 법적인 권한을 부여 받고, 학생생활규정의 임의적 규정을 활용하면 인권침해로 여겨질 수 있는 부분도 “정당한 지도”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물론 현재 판례들을 통해 그 “정당한 지도”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는 있지만 여전히 간접체벌을 인정하는 법이 살아 있는 한 인권침해가 법에 의해 사소하거나 경미하거나 중대하지 않다고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기에 문제다. 따라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법률적으로 제시하는 일이 필요하다. 이미 생활규정에 명시된 교사의 권한은 무시되었고, 사문화되었으며, 규정력을 잃었다. 이를 법률적으로 유효하게 만드는 방법은 초중등교육법에 학생인권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교사의 권한에 분명한 선을 그어주는 것이 교사에게도 업무의 명확성을 높이고 권한의 한계를 분명히 하여 법률적인 리스크를 줄일 것이다.

학생의 교사 인권 침해를 금지하는 조항도 마찬가지다. 이제 법률적으로 중한 죄로 여겨질 수 있으므로 관련 징계 규정을 강화할 것이 분명하다. 학생들이 교사의 부당한 생활지도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인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될까? 실제 그런 사례들은 너무도 많다. 교사가 담요를 압수한다든지, 동의 없이 소지품 검사를 한다든지, 인격 모독적인 발언을 한다든지, 교사용 화장실을 썼다고 혼난다든지, 성차별적인 언행을 한다든지 했을 때, 이에 대해 불응하거나, 항의하는 과정에서 학생의 일부 언행이 교사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면 학생들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다. 지금도 학생들은 생활규정에 나와 있는 자신의 권리를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알아도 자신의 권리를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주장하기 어렵다. 자신의 권리침해를 사소화하는 학교와 사회의 태도를 알고 있고, 반면 자신을 평가할 권한이 있는 교사들에게 대항할 수 있는 수단이 사실은 많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에 법률까지 강화하면 이런 억울한 사례들은 어찌할까? 그래서 더욱 학생인권을 법률로 규정하고 기본권 침해를 막을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그것이 학생인권법이다.

예전에 참여한 스쿨미투 관련 워크숍에서 한 교감이 학생 신체를 어느 정도까지 터치할 수 있는지 가이드라인을 국가가 법으로 정하면 좋겠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 어디까지가 성추행인지 명확한 근거를 정해주면 따르겠다는 뜻이다. 교총에서도 이와 비슷한 요구안을 교육부에 전달한 적이 있다. 하지만 명확한 기준은 국가가 정하는 것이 아니다. 법률상의 제한은 이미 나와 있다. 그것은 학생의 동의다. 그리고 위급한 상황이나 다른 피해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교사들의 요구는 자신의 신체접촉이 교육적으로 정당하다는 것을 국가가 보증해달라는 요구다. 그렇지만 실제로 불가능한 것이기에 이와 관련한 매뉴얼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오히려 필요한 것은 경계 존중, 성인지 감수성 교육 등 학생의 권리에 대한 교사의 인식개선이다. 생활교육 역시 이와 같다. 생활교육의 명확한 법적 한계는 학생인권이다. 그래서 교사는 더욱 학생인권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하지만 그 법적 의무를 교사들은 다하지 않고 있다. 업무상 필요한 일을 게을리하고 있다. 국가는 그런 교사들에게 한계를 그어주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교사들은 학생인권보다는 공부가 우선이라는 사회의 힘을 등에 업고 자신들의 힘의 과시를 통해 명확한 법적 한계를 넘어서려는 요구를 하고 있다.

전북 부안의 한 교사가 학생인권센터의 조사를 받던 중 스스로 목숨을 내려놓은 일이 있었을 때, 언론과 보수 단체들을 중심으로 학생인권센터의 무리하고 강압적인 조사를 규탄하고 학생인권 때문

에 교권이 추락하고 정당한 교육을 하지 못한다는 여론이 형성됐고, 학생인권에 호의적이었던 전교조도 이 흐름에 동참했다. 그 후 교권 강화는 모든 교원 단체들의 숙원사업이 된 것 같다. 그런데 올해 대법원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 무리한 조사는 아니었다며 유족의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다. 하지만 언론은 주목하지 않았고, 조용히 묻혔다. 그 사이 “전북교육인권조례”가 통과되었고, 그들이 바라는 학생인권센터의 직권조사 권한을 약화시키는 조항이 포함되어 이제 교사들은 학생인권 침해 사안에 대해 조사받을 의무가 사라졌다. 잘못된 방향임을 알고 있지만 교사단체들은 나서서 말리지 못하거나 알아도 모른 척을 한다. 왜? 교권 강화라는 마법의 단어는 교사들이 애쓰고 고생하고 있으니 그 정도는 해줘도 된다고 이해해주기 때문이다. 그리고 교권 강화라는 달리는 호랑이의 등에 올라타서 이제는 내려오기가 어렵게 되어버렸다. 밀은 자유론에서 정부의 힘보다 사회의 힘이 더 세고 사회 다수의 힘으로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다수의 폭정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의 힘이라고 할 수 있는 법령과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의 자유라 할 수 있는 학생인권을 보장하며 “지도”하는 것이 아니라, “교권과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학생들의 본분인 공부를 잘하게 하려면” 학생인권을 축소해야 한다는 사회 다수의 주장 등 얽고 학생의 자유를 억압하며 “지도”하는 것은 교사가 다수의 폭정에 힘을 보태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을 정당한 “생활지도”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또 “학생생활지도법”이 시행되어 교원이 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생활교육할 때, 권한이 강화된 만큼 그 행사에 있어서도 권한 밖의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는 점을 오히려 교사들이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 된다. 영화 <스파이더맨>의 유명한 대사를 떠올리면 좋겠다.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징계에 관해 교육청에서 절차를 자세히 안내해주는 이유가 교사들이 절차적으로 미흡하게 학생징계를 추진하여 교육적으로 학생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주지 않도록 돕고, 교사들이 잘못된 절차를 따라 권한을 남용하지 않도록 돕기 위해서일 텐데, 이제 더 강화된 “생활지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면 이 권한을 잘못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응분의 책임을 져야한다는 점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이는 교사들의 의도와는 반대로 더 많은 송사와 쟁송으로 힘들어 질 수 있고, 법적으로 갖춰야 할 절차나 서류들이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는 점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이미 강화된 학교폭력처벌법을 통해 교사들은 그 효과를 알고 있을 것이다. 이것은 교육적으로도, 행정적으로도, 그리고 인권적으로도 좋은 방법이 결코 아니라고 생각된다.

징계 기준(제40조 관련)

구분	항	행위 내용	징계 내용			
			교내 봉사	사회 봉사	특별 교육	출석 정지 (전학권고)
교권	1	교사에게 폭언을 하거나 폭력을 가한 학생	○	○	○	○
준법	2	공공 문서를 위·변조하거나 불순한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대여한 학생	○	○	○	○
	3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불응한 학생	○	○	○	
	4	징계 지도에 불응한 학생		○	○	○
	5	인장 및 제 증명을 위조한 학생	○	○	○	
	6	형법상 유죄로 판결된 학생			○	○
	수업	7	수업 또는 타인의 학습을 방해한 학생	○	○	○
시험	8	고사 중 부정행위를 했거나 동조한 학생	○	○		
	9	시험 문제를 누설 또는 문제지를 훔친 학생	○	○	○	○
약물	10	교내에서 흡연 또는 음주한 학생		○	○	
	11	본드, 대마초, 환각제나 마약류를 복용한 학생		○	○	
폭력	12	따돌림, 폭력 등 학교 공동체의 평화적 관계를 깨뜨리는 일체의 행위	○	○	○	○
	13	흉기를 폭행에 사용한 학생	○	○	○	○
	14	공공 시설물, 집기류 등을 고의로 파손한 학생	○	○	○	
	15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스토키 행위를 한 학생	○	○	○	○
금품	16	타인의 소유물을 훼손(절도행위 포함)한 학생	○	○	○	
기타	17	소지 및 사용 불가한 물품을 소지하거나 사용한 학생	○	○	○	
	18	학습 기자재(컴퓨터)를 학습 목적 외로 사용한 학생	○	○		
	19	동일 학년에 2회 이상 동일 징계를 받을 때는 가중 처벌을 한다.		○	○	○
	20	이 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학교생활교육위원회의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	○	○	○

토론

**학생생활지도법은
교사들의 두려움을
없앨 수 있을까?**

전세란
서울 지역 초등 교사
인권교육을위한교사모임 샘

학교 현장에서 무력감을 호소하는 동료 교사들의 목소리가 짙다. 전교조가 작년에 발표한 '아동학대 사안 처리 과정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동학대로 자신도 신고를 당할까봐 우려한다고 답한 교사는 전체 응답자의 90%에 해당한다. 일상적인 갈등도 법으로 재단되는 학교 현장의 사법화가 심화되면서 작은 실수도 무거운 책임으로 이어질 것 같은 분위기에 많은 교사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겠다.'고 두려움을 호소한다. 악성 민원인에 가까운 보호자와의 대응, 혼자 책임져야 하는 아슬아슬한 교실 상황에서 느끼는 교사들의 두려움은 분명 실체가 있다. 많은 교사들은 두려움의 원인이 교권 침해 혹은 교권의 약화에서 비롯되었다고 판단하여 교사의 권한 강화를 통해 두려움을 해소하고 자유로운 교육활동을 보장받기를 요구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전까지 교장에게만 있던 학생생활지도권을 교사에게도 부여하는 학생생활지도법 개정안이 통과되었고 시행을 앞두고 있다. '생활지도권한'을 가진다는 법적 명시로 교사들은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고 자유로운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가. 교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권한'의 법제화인가?

1.

'생활지도권한'은 이전까지 교사에게 없었는가. 생활교육은 학교 교육의 중요한 일부분이기에 법적 명시와 상관없이 교육 주체로서 교사의 생활지도는 인정되어왔다. 교사들은 학칙이나 각 교실에서 정한 규칙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학생들이 자신의 행동을 책임질 수 있도록 교육해왔다. 그러나 교사의 정당한 생활교육 행위에 대해서도 부당하게 문제 삼아 고소·고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이 때 '교원의 생활지도권' 조항은 사법적 판단 앞에서 교사가 정당한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는 법적 보호를 위한 선언적 의미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2.

다만 '교원이 생활지도권을 갖는다.'라는 조항을 개인 교사가 자의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강화된 것이라고 확대해석해 적용하는 것이 우려된다. 생활지도권이 법제화된 것을 개인 교사가 직위 권력을 바탕으로 한 학생 통제 수단을 갖게 된 것이라고 여겨 오용하면 오히려 학생의 기본권이 위협받을 수 있고 학생·보호자와의 갈등은 불가피할 것이다. 그렇기에 학생 지도의 범위를 '법령과 학칙이 정하는 바'에 제한하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그럼 교육 현장에서 '학칙'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쓰이고 있는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4항에 따르면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생활규정의 의미나 내용, 기본적으로 가지는 권리 등에 대한 교육 없이 학생 의견 수렴 절차를 형식적으로 안내하고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 막상 마련된 학생생활교육은 교육공동체를 운영하는 데 있어 효용성 있게 작용하지 못하기도 한다. 학칙에 따른 학생생활지도가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학생생활교육의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토론과 민주적인 의견 수렴, 교육공동체 안에서의 실질적인 활용이 기반이 되어야 한다.

3.

학생생활지도법의 마련은 그 자체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으나, 교사의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교사가 교육현장에서 겪는 두려움은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라고 생각한다. 하나는 교실에서 학생의 돌발행동이나 공격행동에 대한 대응을 혼자서 책임지는 것, 또 하나는 정당한 교육활동 행위에 대해 보호자로부터 부당하게 고소/고발되어 사법적 판단 앞에 놓이는 것이다.

4.

먼저, 학생과의 관계에서 교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학생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라기 보다는, 학생에 대한 이해와 교육을 함께 지원하는 공적 시스템이다. 교육활동 침해행위, 특히 교사의 생활지도에 불응하는 학생의 행위를 판단할 때, 이를 모두 ‘생활지도’의 관점에서만 판단할 수 있을까. 학생의 돌발행동이나 공격행동을 ‘교권’을 침해하는 학생 개인의 일탈적 문제행동으로만 볼 수 없다. 구성원의 안전이나 인권이 위협받는 순간에 교사가 즉각적으로 지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더 중요한 것은 교실 회복을 위한 학교 공동체 차원에서의 개입과 지원이다. 학생에 대한 대응을 개인 교사의 역량과 권한에만 맡겨두는 것이 아니라, 아동이 겪는 심리·정서적 어려움이나 신경다양성적 특성, 가정적 배경을 고루 이해하고 지원하는 위기지원시스템을 바탕으로 함께 책임지는 공동체가 필요하다.

5.

또한, 교육적 갈등을 법의 판단에 맡기기에 앞서 학교나 교육청 차원에서 중재하고 조정할 수 있는 과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아동학대 관련 법은 아동의 권익 보호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지만, ‘아동학대 신고’를 무기 삼아 교사를 위협하는 도구로 작동하기도 한다. 신고로 인한 법적 절차가 진행되면 조사 대응, 변호사 선임, 관련 서류 준비 등 모든 일들이 개인의 몫이 되며 이 과정에서 오히려 교육활동이 침해된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은 신고에 대한 두려움으로 배가 된다. 법은 사회적 약자의 권리 구제 수단이지만, 모든 갈등 해결의 유일한 방안은 아니다. 교사가 학생·보호자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자신의 교육 행위를 성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렇기에 법에 해결을 맡기기 이전에 전문가의 중재를 바탕으로 소통할 수 있는 과정이 더욱 필요하다.

현재 교육 공간에서 교사가 겪는 고충을 ‘힘의 추락’으로 해석하면, 교육 주체 간 대립의 문제로 판단해 교육 현장의 갈등은 더 심화되고 결국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주체이면서 동시에 상대적 약자인 ‘학생’에게 화살이 향할 수 밖에 없다. 학생인권과 교사의 교육 권한은 상호보완적인 관계라는 것은 자명함에도 불구하고, 교육의 위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학생인권조례’를 뜯금없이 공격하는 움직임을 보면 그렇다. 두려움에 잠식되지 않고 교사가 두려운 것은 무엇 때문인지, 교사를 지원하는 어떤 방향과 방법에 목소리를 모으는 게 정말로 교사와 학생에게 도움이 되는지 잘 들여다보고 힘을 신는 것이 필요한 때다.

토론

**그림같이 앉아 있는
학생들만 가르치겠다는 학교?
- 사례로 본 학생생활지도법의 우려점**

이윤경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최근 몇 년 사이에, 학생을 ‘맞서 대응해야 할 상대방’으로, 학부모를 ‘처리해야 하는 민원인’으로 몰아가는 풍토가 사회 전반적으로 심각하게 퍼져가고 있다. 예전에도 학부모를 이기적인 민원인으로 취급하는 문화는 존재해 왔지만, 학생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적대시한 적은 없었던 것 같다.

교권침해의 대표적 사례로 지목되는 충남 지역 중학교의 수업 태도 불량 사진과 불법 촬영 의심 건은 ‘학생생활지도법 개정’으로, 호랑이스티커와 까치발로 유명한 전북 지역 초등 2학년 사안은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에 대비한 ‘아동학대법 개정’으로 연결되고 있다.

하지만, 이 사안들은 팩트 체크가 필요하다.

예컨대, 충남의 해당 중학생은 교사를 불법 촬영하지 않았다는 것이 나중에 밝혀졌지만 정정 보도는 찾아보기 힘들다.

1. 학생 인권 침해가 교권 침해로 둔갑한 사례

부당한 아동학대 신고라며 거론된 전북 초등학교 호랑이스티커 사안은, PD수첩 방송 이후 해당 학부모가 직접 우리 단체에 편파 방송이라며 상담을 접수했고 관련 자료를 보내왔다. 2021년 3월에 발생한 이 사안은 당해 12월에 전북교육청 학생인권심의위원회에서 이미 ‘상벌점제와 이로 인한 벌 청소, 뒷집 지고 까치발 이동은 학생의 인격권과 휴식권을 침해한 것이 맞다’고 심의한 후, 교사에게는 특별인권교육 이수, 교장에게는 학교 교직원 대상 특별인권교육 실시를 권고한 사안이다. 방송에 나온 것과 달리 칠판에는 호랑이스티커가 아닌 레드카드만 붙어 있고 그 옆에는 매일 학생들의 이름이 부착되었다고 한다. 레드카드를 받은 학생들에게는 방과 후에 벌 청소를 시켰고, 급식실까지 까치발로 이동한 것은 한두 번의 안전 훈련이 아닌 3월에 지속적으로 진행된 생활지도였다는 게 여러 학부모들의 증언이다.

방송에 알려지지 않은 또 다른 내용은, 학교 측이 같은 해인 2021년 7월에 학부모를 교권보호위원회에 회부해 ‘교권침해’로 조치를 내렸는데, 2023년 2월, 고등법원에서는 ‘교권보호위원회 조치 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다는 것이다. 교권침해 사안이 아니라는 판결이었다.

게다가, 해당 학교는 그 전년도인 2020년 11월에 이미 전북교육청으로부터 ‘학생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규정이 상당한 학교’로 지목되어 학칙을 개정하라는 권고를 받은 바 있다. 레드카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었고, 해당 교사 대신 배정된 기간제 교사도 시행했다고 한다. 문제는 인권 감수성이 낮은 학교의 문화와 이를 그대로 반영한 학칙에 있다.

학교생활규정 전면 개정 권고 대상 학교 (초등학교)

순	지역	학교명	2017년 12월 이후 개정하지 않은 학교	학생인권을 침해하는 규정이 상당한 학교
32	전주	초	○	○

(출처 : 전라북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16232 공문)

2. 타임아웃과 학습권 침해가 ‘수업’이라고 한 사례

2017년 우리 단체 학부모상담실에 접수된 경기도 사례다.

공립 중학교 1학년 학생이 쉬는 시간에 책상 위에 싫어하는 과목 1-국어, 2-진로, 3-도덕이라고 적고 맨 위에 ‘극혐’이라고 적었다. 도덕 시간에 이를 본 교사가 “교권을 침해했다. 네가 내 인권을 침해했다”면서 수업 시간이 종료될 때까지 뒤에 서 있게 했다. 이 과정에서 전체 학생들 앞에서 해당 학생을 ‘뱀상’이라고 불렀다. 학생은 수업 후 교무실에서 쉬는 시간 내내 무릎을 꿇고 있었고 방과 후에도 불려가 1시간 30분 동안 훈계를 들었다. ‘교권침해’라고 하면서 ‘누구에게 피해를 주었는가’ 등을 적는 회복적 반성문도 A4 용지를 다 채워서 제출했다. 수업 시간에 나눠줬던 유인물을 주고 거기에 나온 용어를 모두 외우게 한 뒤에야 귀가시켰다.

다음 날 학교로 찾아가 사과를 요구하는 학부모에게 도덕 교사는 ‘벌을 준 게 아니라 수업 중에 못한 공부를 시킨 것’이라며 화를 냈다. 무릎을 꿇게 한 것은 사과하겠지만 반성문이나 용어를 외우게 한 것은 수업이었다며 사과할 수 없다고 했다.

한 교사 단체가 아동학대 법 개정의 근거로서 교육적 수단이라고 주장한 ‘타임아웃’은 체벌이고 학습권 침해일 뿐이다.

3. 무소불위 ‘학칙’들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상담 건이 있다. 고3 2학기에 퇴학을 당하게 생겼다면 학부모가 울면서 전화했다. 1~2학년 때 선도위(현 학생생활교육위원회)가 총 세 번 열렸었는데 각각 복장 불량, 흡연, 창체 시간 무단 결과였다고 한다. 3학년 때는 마음을 잡고 성실하게 지냈는데 이번에 흡연이 적발되어 퇴학 조치가 내려졌다. 별점은 누적해서 적용할 수 없다고 안내했는데 학교 측은 ‘우리 학교 학칙에는 그렇게 되어 있다’고 했다. 6년 전의 일이다.

그런데 이런 학칙들은 여전하다. 2018년 우리 단체가 전국 200개 중·고등학교 학칙을 조사해 발표했다. 그중 한 학교의 홈페이지에서 다시 학칙을 찾아 보았다. 2018년과 별로 달라진 게 없다.

이런 학칙은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지역이든 없는 지역이든 어느 학교나 마찬가지다. 서울의 어느 고등학교에서는 아무리 더워도 4월까지 교복 재킷을 반드시 입어야 하고, 체육 시간이 아닐 때 체육복을 착용하면 안 되고, 흡연 세 번 적발되면 퇴학이라고 한다.

법령에 따르기는커녕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학칙’은 얼마든지 학생을 학교 밖으로 내쫓을 수 있다.

경북 지역 A고등학교 학칙 중 별점 항목

- ▶ 용의복장 : 파마나 염색 / 미용 전열 기구를 교내에 반입 / 색조 화장(매니큐어, 틴트) / 교복 변형 및 치마 길이가 짧은 학생 / 귀걸이 착용 / 등교 시 복장 위반(하복, 동복 미착용, 슬리퍼, 물 착용)
- ▶ 준법 : 다툼·욕설로 실내에서 떠드는 행위 / 책걸상 등 공공 기물에 낙서 / 조회, 일과 중 휴대 전화 및 전자기기 등 무단 사용 / 음란 서적, 담배, 라이터 등 불필요한 물품 소지 / 흡연 및 음주 행위 / 귀중품 절도(참고서, 교과서, 전자기기)
- 수업 태도 : 상습적으로 수면하는 경우 / 수업 준비 및 학습 태도 불량(자율학습 시간 포함) (객관적 판단) / 수업 방해 및 면학분위기 저해(자율학습 시간 포함) (객관적 판단)
- ▶ 교권 : 교사의 정당한 교육적 지시 거부 / 수업 중 교사에게 불손한 언동과 소란행위 / 학생지도 중인 교사에게 폭언을 한 경우 / 기타 주의 및 경고를 필요로 하는 경우(시정 조치 안 될 시)
- ▶ 기타 : 상기 항목에 속하지 않으나 학생 본분이 바르지 못함

4. 학생이 없는 교실, 학생을 내치는 교원

올해 6월부터 시행되는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는 조항의 법률적 해석과 범위가 어떻게 되든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미치는 파급 효과는 무척 클 것이 자명하다.

지금까지 부당하다고 항의하던 모든 사안들에 ‘합법적’이라는 근거와 날개를 달아준 격이다.

여기에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② 학생은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은 자의적이고 부당한 권력에 그럴 듯한 핑계로 제공될 것이다. 지금도 학교와 교사의 일방적인 조치에 대해 근거로서 자주 등장하는 말이 “다른 학생들을 위해서 그랬다”, “다른 학부모들이 원했다”가 아닌가.

교원의 교육활동이 힘들지 않다는 의미가 아니다. 하지만 이는 생활지도 규정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다. 교장만 징계할 수 있었기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이번 개정안은 교원에게 아무 권한도 주지 않으면서 책임을 져야 할 경우만 떠넘기기 딱 좋은 규정이다.

교원에게 묻는다. 말 잘 듣고, 즐거나 자지 않고, 떠들지 않고, 판짓하지 않는 학생들만 모아놓고서 대화하고 소통하고 참여하는 수업이 아닌, 학원 강사처럼 강의하고 필기하는 교실을 바라는 걸까.

그렇게 구시대적인 교육 활동을 꿈꾸며 소위 ‘그림 같은 학생들’을 일방적으로 ‘가르치겠다’고 할 것이 아니라, 달라진 학생들, 달라진 학부모들에 맞춰 학교 시스템을 개선해 달라고 해야 한다.

ADHD, 다문화, 느린 학습자, 경계선지능 등 담임교사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특수 교사를 학급마다 배치하고, 힘든 학부모 상담과 기관을 연계할 전담 인력과 시스템을 지원하고, 학교마다 상담교사를 필수로 배정하라고 요구하는 게 옳다.

맺는 말

다른 학생의 인권과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는 개인적 행위까지 교육활동 방해 행위로 규정하고, 개인의 용모나 생활 습관을 규제하는 것을 생활지도라는 명분으로 당연시 한다면, 이 나라에서 ‘학생으로 살아남기’는 무인도에서 살아남기보다 어려운 미션일 것이며, 학부모들도 굳이 버텨서 살아남으라고 권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은 공교육 외에도 선택지가 많아졌다.

하지만, 조금만 더 희망을 가지고 학교와 정부와 국회에 요청한다.

한쪽을 억누르고 차별한다고 해서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는 건 학교폭력 제도를 보며 우리 모두 절실히 깨닫고 있다. 모두의 인권이 동등하게 존중될 때 평화로운 학교가 조성되며, 이는 서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필요에 공감하고, 공동의 목표를 만들어 함께 협력할 때 가능할 것이다. 학생생활지도법 개정안의 폐해를 최소화하고 인권친화적인 학교 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길 바란다.

토론

지도권 악용에 대한 대책은 과연 무엇입니까

안병석
서울 지역 중학생

안녕하세요.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과 전국학생협회에서 활동 중인 중학교 3학년 안병석이라고 합니다.

우선 ‘학생 생활 지도권이 있다’는 조항으로 인해, 교사들이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교육이라고 주장할 수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제 제가 재학 중인 중학교 체육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관계가 된다고도 생각됩니다. 저희 중학교 체육 선생님은 “일반 교사가 너네 앉았다 일어났다 시키는 건 교육청에 신고하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내가 시키고 신고 들어가면 체력 키우려고 시켰다고 하면 처벌 안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학생 생활 지도권이 있다는 조항이 있기도 전에 일부 선생님은 현재 제도의 허점을 알고 계십니다. 교사가 이 지도권 조항을 악용하여 언어폭력, 성희롱, 차별 발언을, 그리고 심하면 폭력 또한 생활지도로 포장할 수 있습니다.

반면 학생인권의 경우에는, 보장 장치인 법률도 없고, 학생인권조례가 없는 지역도 있으며, 현재 서울 및 충남의 경우는 폐지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사의 ‘지도권’을 확대하는 것은 인권침해를 불러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정된 법률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현재 학칙과 학생생활규정에는 문제가 있는 내용이 많고, 학칙이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인권을 침해하는 학칙을 바로잡을 기준과 구제 수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학칙 제·개정을 포함해서 학교운영에 학생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됩니다.

요즘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여태까지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운동을 하면서 저는 “10년 전 과거로 돌아가는 일”이라고 외쳐 왔습니다. 지금 지도권의 강화 등 교사가 학생을 통제할 권한은 강화됐지만, 학생인권조례와 같은 학생인권을 지키는 것은 폐지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가인권위를 제외하면 인권 침해할 당해도 구제 기구가 없고, 학생들이 직접 인권위에 구제를 요청하기는 여러 가지 사유(눈치, 차별과 두려움 등)가 있어 힘든 일입니다.

추가로 여러 가지 교사의 부당한 지도나 학칙에 의한 인권 침해 사례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교내에서 학생들끼리의 ‘학교폭력’이 아닌 일부 교사들의 폭력으로 학생들이 죽어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학생들이 잘못된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허나 우리 누구도 잘못했다는 이유 하나로 누군가에 의하여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받지 않아야 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학생들 대부분은 학교에서 하루의 절반 정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 학생들에겐 교사에게 찍히는 것이 비단 1대1의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사들은 학생들을 움직여 한 학생을 ‘따’ 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에서 체벌이 사라졌지만 상벌점제가 남아 있고, 한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정도인 생활기록부를 교사가 작성합니다. 학생들은 교사들의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제작년의 또 다른 사례에서는 강원도 한 사립여고에서 학생들을 의자 위에 올라서게 하고 여교사가 함부로 치마를 들추고 셔츠를 올리며 “왜 안에 아무것도 안 입었냐”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제3자인 저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들으시고 표정이 일그러지며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위와 같이 여러 가지 사례로 통틀어, 교사의 생활지도권 강화로 생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생활지도란 명목하에 80~90년대 학교로 돌아가며 인권이 후퇴하는 지경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위에서도 말했듯이 학교 현장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도 지금은 바로잡을 수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도권 강화만 이뤄지는 건 우려될 수밖에 없고, 서울 및 충남 등에서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을 즉각 중단해야 하며, 학생인권조례에 부족한 점을 보완하거나 학생인권을 보장할 법률이 필요합니다.

급하게 작성한 것이라 짧고 말이 안 맞지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학생 생활지도를 명목으로 교사가 학생을 괴롭힌 사례

A 양은 올해 2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나이는 17세. 휴대전화 속 마지막 메모에는 2년 전 중학교 재학 당시 만났던 교사 이름이 적혀 있었다. 아이의 유서를 본 부모는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2년 전 교사의 만행이 나열돼 있다. 학생들 앞에서 A 양에게 소리를 지르고, 유독 A 양의 행동과 복장을 엄격히 단속하는 일들이다. 과한 부분이 있지만 교사의 말처럼 ‘욕설이나 폭언’은 없다.

그러나 A 양은 교사의 잇따른 꾸중이 있던 그해 처음 자살 시도를 했다. 학생회장이었던 A 양은 일주일에 한 번 등교하는 위기관리대상 학생이 됐다. 2년 후 A 양은 숨졌다.

특이 사례일까. 다른 교실에도 A 양들이 있다. 지난해 12월 부산의 한 예고에서는 교사의 괴롭힘을 호소하던 B 양이 끝내 숨졌다. 부산의 한 여자고등학교에 다니던 C 양은 교사 괴롭힘 사건 이후 잠을 자지 못한다. 과호흡도 왔다. 현재는 학교에 다니지 않고 있다.

학생들은 하루 절반을 학교에서 보낸다. 이들에게 교사에게 ‘찍혔다’는 것은 교우관계와 학업에의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가져오게 한다. 교권이 예전만큼 절대적이지 않다고는 하나, 여전히 학교 안에서 생활기록부를 준 사람도, 말을 현실화할 힘을 가진 것도 교사다. 10대에게 학교는 여태까지 경험한 사회의 절반이다. 좁은 세계에서 한 번의 실패가 가져오는 파급력은 생각보다 크다.

청소년인권단체 이수나로 부산지부 김찬 청년활동가는 “체벌은 사라졌지만 체벌의 동기도, 체벌하던 교사도 남아 있다”며 “상벌점제나 차별, 공개적 모욕 등 더 은밀한 방식으로 체벌은 수단만 달라진 채 여전히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교사 괴롭힘’과 A 양의 ‘극단 선택’ 사이 남겨진 질문이 많다. 교사의 괴롭힘은 증거로 잘 드러나지 않는다. 애초 A, B, C 양이 호소하는 괴롭힘의 종류는 이름을 붙일 수 없는 것인지도 모른다. 지금 폭력을 설명하는 말은 교사가 말했듯 ‘욕설이나 폭언, 폭행’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지금 학생들이 말하는 ‘폭력’은 다른 층위다. 교사가 A 양에게 폭력적이었던 순간이 언제였느냐는 질문에 동급생들은 때리고 욕하는 장면을 말하지 않았다. 아래층까지 들리게 큰소리로 혼내고, 회의록을 던지고, A 양에게만 유독 복장 검사가 엄격하던 장면을 기억해 냈다. 그들에게 폭력은 공개적인 모욕, 차별, 위협으로 남았던 것이다.

- 부산일보, “교사의 암묵적 괴롭힘도 폭력”... 극단 선택한 학생이 남긴 질문, 폭력의 재정의, 2022년 8월 25일.

● 학칙을 적용하여 단속, 지도하는 과정에서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

강원도에 있는 한 사립여자고교 교원들이 학생들을 일제히 의자 위로 올라가게 한 뒤 교복검사를 벌이면서, 일부 학생의 '치마까지 들쳤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학교 학생은 "수치심을 느꼈다"고 밝혔다.

16일 <오마이뉴스>는 강원도에 있는 A고교 학생이 기자에게 메일로 보낸 교복검사 제보 글과 교복 검사 사진 파일을 살펴봤다. 본인을 3학년 학생으로 소개한 이 학생은 실명 제보 글을 통해 "7월 14일 6교시 중에 3학년 교복불시검문이 있었다"면서 "3학년 ○반 담임 B선생님(남)과 3학년 △반 담임 C선생님(여) 등이 각기 다른 반에서 학생들을 의자 위로 올라가게 명령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C선생님께서 한 학생의 치마를 허락 없이 들추고 두 학생의 셔츠를 올리며 '왜 안에 아무 것도 안 입고 다니니?' 라고 말씀했다"고 주장했다. (중략)

A여고에 확인 결과, 이 학교 3학년 교사들이 지난 14일 오후 3학년 학생들을 의자 위에 올라가게

한 뒤 일제히 진행되는 교복검사를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는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학생들을 의자 위로 올라가게 한 이유'에 대해 "치마 길이를 정확하게 보려고 그렇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교사도 "요새 학생들 복장이 흐트러져서 1~3학년 학생들 모두를 대상으로 의자 위로 올라가게 하는 복장검사를 진행했다"면서 "대부분은 눈으로만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 오마이뉴스, "의자 위로 올라가라더니 치마 들쳐"... A여고의 교복검사, 2021년 7월 16일.

● 여전히 여러 학교에 있는 인권을 침해하는 학칙들

"끈으로 된 나시(민소매) 속옷 착용 금지, 반드시 라운드형 러닝 속옷을 착용해 브라지어를 가려야 한다." (서울 종로구 S 여중)

"발등이 보이는 양말은 절대 금지, 반드시 발목을 덮는 무채색의 양말만 착용 가능하다" (서울 관악구 M 여고) (중략)

① 2021년에도 '두발 자유화'를 부르짖어야 한다니

여학생은 귀밑 3cm 이하의 '칼단발', 남학생은 1cm 이하 '밤송이 머리'를 강요하던 시대는 지났다 하더라도, 두발 규정 자체가 사라진 건 아니다. 머리색이 선천적으로 연하거나 곱슬거리는 경우 보호자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확인증서를 항상 소지해야 하며, 긴 머리는 예외 없이 '귀높이'로 묶어야만 한다(서울 관악구 M여중). 인천 G여중 재학생의 제보에 따르면, 한 다문화가정 출신 혼혈 학생은 학교 측의 요구에 따라 선천적으로 붉은 머리색을 검은색으로 염색해야만 했다.

짧은 머리를 권장하면서, 막상 '숏컷(쇼트컷)'은 "동성애를 조장할 수 있다"는 이유로 금지한 사례도 있었다. 심지어 머리를 묶을 때 쓰는 머리끈은 반드시 방울 등의 장식이 붙어 있지 않은 검은색이어야만 한다(서울 동작구 S여중). (중략)

② 속옷, 스타킹 색까지 '핀셋 규제'

최근 몇 년 사이 학생들의 강력한 요구로 일부 여학교에 '교복 바지'가 도입됐지만, '햇빛 알레르기' 같은 치명적인 건강상 이유가 없는 한 착용이 금지되는 여치구니없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한다. 인천의 G여중은 공식 학교 행사나 졸업식 등에서 교복 바지 착용을 금하며, 키가 자라 바지 끝단에서 발목이 드러날 경우 더 큰 사이즈로 재구매 해야 한다.(중략)

특히 여학교에서는 속옷과 스타킹 등의 색깔까지도 통제의 대상이 된다. 지난달 8일 문장길 서울 시의회 의원이 서울시 관내 여중 여고 학생생활 규정을 조사한 결과, 중학교 44개교 중 9개교, 고등학교 85개교 중 22개교에서 여학생의 속옷 착용여부와 색상, 무늬, 비침 정도를 규정하고 있다. 서울 관악구 S여중에선 '반드시 살구색이나 흰색 나시(민소매) 속옷'을 입어야 하며, 검은색 속옷 착용은 원천 금지한다. 이 학교의 한 졸업생은 "색 있는 속옷을 착용했을 때, 한 교사가 '보여주려고 입고 왔냐'며 핀잔을 줬던 것이 큰 상처가 됐다"며 "교칙이 엄격한 학교일수록 교사들이 '복장 통제'를 구실로 학생들에게 성적으로 불쾌한 시선을 투영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③영하 14도에도 롱패딩은 '학교장 허락이 있을 때에만'

하물며 추울 때 입는 외투나 매일 드는 책가방에도 일일이 '조건'이 붙는다. 가방은 패턴이나 장식이 없는 무채색 제품(서울 강서구 D여고)만이 허용되고, 키링이나 열쇠고리가 보이면 즉시 압수된다. 목주나 염주와 같이 종교적 목적을 위해 착용하는 장신구도 금지된다. 영하 14도의 추위에 교복 재킷을 받쳐 입지 않고 롱패딩을 입었다고 별점을 받는다 하면(대전 S남고), 교내에서 방한용 담요를 덮는 것이 금지되기도 한다(서울 관악구 M여고). 경량 패딩 조끼 등을 교복 재킷 안에 겹쳐 입는 것을 금하는 경우는 셀 수 없이 많다.

- 한국일보, 여중생 A는 무사히 학교 정문을 통과할 수 있을까?, 2021년 4월 15일.

토론

교육부 의견

배성주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 사무관

토론회 - 학생생활지도법, 학생과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가?

발행일

2023년 4월 25일

공동 주최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강민정

